

서울특별시 안전감사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92
----------	-----

2014년 12월 19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4년 11월 11일,
김혜련 의원(찬성의원 32명)
- 나. 회부일자 : 2014년 11월 14일
- 다. 상정일자 : 제25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14년 12월 3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혜련 의원)

가. 제안 이유

- 최근 건설공사 및 도시시설물에서 잇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 건설공사 및 도시시설물에서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시민에 의한 행정감사제도인 옴부즈만을 설치·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 감사관은 현재 안전감사 옴부즈만을 구성·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안전감사를 위한 옴부즈만의 자격요건, 직무 등을 조례로 규정하여 안전감사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안전감사 옴부즈만은 안전감사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안전감사의 수행, 감사결과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수립에 필요한 자문 및 검토를 담당함(안 제2조).
- 정원은 20명이며, 전문분야별로 인원을 구성하고, 안전감사반의 운영에 참여함(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2014. 11. 18 ~ 11. 25) 결과 : 입법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한태식)

가. 제정배경 및 필요성

- 본 제정안은 건설공사 및 도시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감사 강화를 위하여 안전감사 옴부즈만을 설치하고 운영하고자 제안된 것임.
- 집행부는 지난 1월 현재 안전감사에 시민참여로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감사의 전문성 보강 및 기술자문을 위하여 안전감사옴부즈만 20명을 위촉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은 옴부즈만이라는 명칭과 달리 담당부서의 요청에 의하여 자문 및 합동조사 등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옴부즈만의 본질적 기능과는 차이가 있음.

〈안전감사 읍부즈만 구성 · 운영 현황〉

▶ 사업근거

- 안전감사 읍부즈만 구성·운영 계획(2014.1.21, 감사담당관 961호)

▶ 안전감사에 대한 시민참여로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기술 자문 등을 통하여 안전감사의 전문성을 보강함

▶ 총 위원수는 20명으로 6개 전문분야별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임.

계	건설 안전	토목 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건축 구조	플랜트 설비
20	4	4	3	2	4	3

▶ 자격요건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위원회의 위원

-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관련 전문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자

▶ 직무

- 안전감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의 자문

- 건설공사 및 도시시설물에 대한 안전감사 합동 시행

- 안전감사결과 도출된 개별사안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책 수립의 자문 및 기술검토

- 기타 건설공사 및 도시시설물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

- 지난해 노량진 수몰사고와 방화대교 램프 전도사고 등에서 보듯이 최근 빈발하고 있는 건설공사 및 도시시설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책임감리제도의 확고한 정착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시민에 의한 행정감사 제도인 읍부즈만 활용은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임.
- 현재 안전감사 읍부즈만은 감사관에서 운영 중인 자문기구로 자치 사무로서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사항이 없어 조례로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방침에 근거한 안전감사 읍부즈만이 향후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마련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현재 운영 중인 안전감사 옴부즈만의 경우 사실상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관의 역할에 머물고 있는바, 그 기능에 있어 옴부즈만의 의미에 부합하도록 자율적인 조사 권한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의 사항을 추가하는 방안과 현재 실제 운영 성격(안전감사 자문)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볼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 옴부즈만 용어는 스웨덴어로 다른 사람의 대리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입법부에서 임명하지만 독립성을 확보하여 공무원의 권력 남용에 대한 국민의 불평을 조사하는 입법부의 위원을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시민의 권리 구제기관으로의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현재 서울시는 옴부즈만 용어를 사용하는 제도 운영은 안전감사옴부즈만, 시민감사(참여)옴부즈만,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노익복지옴부즈만, 환자권리옴부즈만 등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으나, 실제 조사 및 처리 권한을 가지지 못한 자문 기능만을 가진 옴부즈만의 잦은 사용은 옴부즈만이 가지는 상징과 권위를 약화시키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사료됨.

○ 현재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도시안전분야 시민참여옴부즈만을 위촉하고 있는바, 시민참여옴부즈만(도시안전)을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해당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과 본 제정안과 같이 별도로 제정할 것 인지에 대하여 안전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13조(시민참여옴부즈만) ① 시민감사옴부즈만의 전문분야 감사·조사·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성복지·도시안전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시민참여옴부즈만을 둘 수 있다.
② 시민참여옴부즈만은 여성복지, 도시안전, 산업경제, 생활환경, 도시교통(도시계획), 교육문화, 일반행정의 7개 분야 총 35명 이내로 한다.

※ 집행부는 이와 관련 본 조례안의 목적은 옴부즈만 용어에 내재된 행정 통제나 감시 기능보다는 자문 및 합동감사를 통해 안전감사의 전문성을 보완하는 것이 주목적이며, 시민감사 옴부즈만 조례에 따라 현재 도시안전분야 시민참여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와외의 차별화가 필요하고, 변별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들어 제명을 “안전감사 옴부즈만”에서 “안전감사 자문단”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바 있음.

나. 세부조문 검토

○ 본 제정안은 안전감사 옴부즈만의 설치 운영을 위하여 정의(제1조), 직무(제2조), 정원(제3조), 위촉(제4조), 해촉(제5조), 임기(제6조), 안전감사반의 운영(제7조), 회의(제8조), 수당 및 검토비(제9조), 시행규칙(제10조)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조에 안전감사옴부즈만 직무는 안전감사의 자문에 관한 직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옴부즈만의 명칭 사용의 취지 및 권한강화를 위해 독립적으로 자체 조사 기능을 부여할지, 제정안과 같이 자문의 역할에 한정할 지에 대하여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안 제2조 안전감사옴부즈만 직무

- 안전감사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
- 건설공사 및 도시시설물에 대한 안전감사의 수행
- 안전감사결과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수립에 필요한 자문과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
- 그 밖에 시장이 건설공사 및 도시시설물의 안전에 관하여 요청하는 자문

※ 다만, 안전감사의 중요성과 지속적 운영 근거를 위하여 마련된 제정안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안 제3조에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20명 이내의 정원으로 하여 건설안전,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건축구조, 플랜트 설비 등 전문분야별로 인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 집행부는 정원과 관련하여 기술의 고도화 등으로 자문이 필요한 전문 분야의 인력을 수용하기 위해 정원을 30명 이내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바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예산 및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안전감사옴부즈만의 활용 실적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2014년도 안전감사(점검) 안전감사옴부즈만 활용실적 〉

(단위 : 천원)

감사(점검명)	참여기간	참여 인원	집행금액 (예정)	예산과목
시.구합동 다중이용 시설물 안전점검	'14.3.7 ~'13.13	9	2,000	도시시설물 안전점검 강화
한강상교량 및 도로터널 특별점검	'14.4.22 ~'14.5.2	5	1200	감사활동지원및감사의투명성제고
도로시설물 (교량,고가) 안전감사	'14.7.8 ~'14.8.4	3	800	감사활동지원및감사의투명성제고
SH공사 아파트 하자실태 특별감사	'14.10.8 ~'14.10.30	7	(400)	감사활동지원및감사의투명성제고
			(1,000)	도시시설물 안전점검 강화

※ “도시시설물 안전점검 강화” 예산과목에서 부족한 외부전문가 자문비는 “감사활동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에서 집행

- 안 제4조(위촉)는 현재 운영(계획)하고 있는 안전감사옴부즈만의 자격 조건을 고려하여 규정하였는바, 자격조건을 이보다 더 엄격히 규정할 경우 전문가의 위촉 및 활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측면을 감안하여 자격조건을 적정성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7조는 안전감사와 안전사고 등에 대한 특별조사를 위하여 안전감사옴부즈만과 안전감사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현재 안전감사를 위해 감사담당관 소속 안전감사팀(1팀 5명)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운영 중인 조직에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의원의 조례발의를 통한 시장의 조직·인사권 침해의 소지는 적다고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전원찬성).

8. 소수 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안전감사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의식의 고취와 안전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의 건설공사 및 도시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감사에 시민이 참여하는 안전감사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안전감사 옴부즈만의 직무는 아래의 각 호와 같다.

1. 안전감사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
2. 건설공사 및 도시시설물에 대한 안전감사의 수행
3. 안전감사결과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수립에 필요한 자문과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
4.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건설공사 및 도시시설물의 안전에 관하여 요청하는 자문

제3조(정원) ① 안전감사 옴부즈만의 정원은 20명 이내로 한다.

② 안전감사 옴부즈만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건설안전,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건축구조, 플랜트설비 등 전문분야별로 인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제4조(위촉) 안전감사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위원회의 위원
2.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관

련 전문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자

3. 안전관리분야에서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으로 해당 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전문가

제5조(해촉) 시장은 안전감사 옴부즈만이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안전감사 옴부즈만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3.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서울특별시의 안전감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 정원의 조정 및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5. 그 밖에 각 호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임기) 안전감사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가 완료되어도 시장으로부터 의뢰받아 수행 중인 자문 등의 대하여는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감사반의 운영)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고 한다)에서 실시하는 안전감사와 안전사고 등에 대한 특별조사를 위하여 안전감사 옴부즈만과 안전감사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감사와 특별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의 관련 위원회 및 자문단 위원과 외부 전문가(이하 '전문가 등'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안전감사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회의) 시장은 건설공사 및 도시시설물 등의 안전과 관련한 사안의 협의를 위하여 안전감사 옴부즈만과 전문가 등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및 검토비 등) ① 시장은 안전감사 음부즈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와 자문 및 조사 의뢰 등에 대한 검토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7조 제2항에 따라 안전감사반에 참여한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와 자문 및 조사 의뢰 등에 대한 검토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